

원산지의 제반이론과 규정 분석 그리고 원산지 판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ules of Origin Review and Rules of Origin Judgement

이제홍(Je-Hong Lee)

동국대학교 해외개발연구소 연구위원

목 차

I. 서론	V. 결 론
II. 원산지 관련 이론적 연구	참고문헌
III. 원산지 규정에 관한 연구	Abstract
IV. 원산지 판정과 대응방안	

Abstract

This study article is a study on the rules of origin review and rules of origin judgement. and The purpose of this article shall be studies to korea foreign law and Korea-American FTA in origin country regulation. this article are two most important elements in determining market access in a FTA. that is the coverage of tariff elimination and rules of origin.

The rule of origin in a FTA greatly influences the creation of economic profit and distribution. Therefore, The Result of the article is review to protection of domestic customers and domestic industries in rules of origin. This study contributes to a understanding of judgement of rules of origin and extend level of generalization of exchange law, WTO, FTA Regulations by review interaction relation

Key Words : the rules of origin, FTA, WTO, generalization of exchange law

I. 서론

무역자유화와 세계화로 대변되는 21세기는 다변화된 국제 경제환경 변화로 인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시장진출과 WTO 그리고 FTA 등에 의한 수입시장개방은 세계를 하나의 무한경쟁시장으로 만들었다. 또한 중국의 개방과 2001년 WTO 가입으로 인하여 지난 몇 년 간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다. 이는 무역자유화에 따른 개방경제체계를 도입하였기 때문으로 개방의 혜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실감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방화가 세부적인 부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개방화 실행에 옮기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원산지정에 있어서는 각국이 원산지 규정을 각기 적용하고 있어서 상당한 접근의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수입한 실로 한국에서 짠 천을 재단해 베트남에서 수입한 재봉실로 꿰매고 일본산 지퍼와 인도산 단추를 단 옷의 원산지는 어디일까? 이러한 다국적 부품이 첨가된 조립품은 원산지 판정에 애매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각 국가들은 제품의 원산지 규정을 자국의 법으로 제정하여 수입제품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은 국가별, 품목별 또는 경제통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 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특히 한미 FTA 협상에서도 상품의 원산지, 즉 국적을 판정하는 기준이 쟁점중의 하나로 협상에 어려운 분야였으나 협정문 제6장에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관한 규정을 협상함으로써 합의문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이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는 이유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상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특정국가의 생산품이 시장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자를 보호할 목적뿐만 아니라 각종 무역제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이다. 그러나 자국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산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타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입국의 원산지 규정뿐만 아니라 국제규범인 WTO 원산지 규정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세계경제가 개방화되고 제품의 이동이 자유로워짐으로써 소비자들은 다양한 제품을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국제간 교역이 활발해지고, 상품 생산이 글로벌화 됨으로써 원산지 확인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원산지 규정은 자국 생산품을 보호함과 아울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또한 자국의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데 있다. 이러한 원산지 규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원산지 평가의 전제가설을 수립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원산지 평가를 통해 글로벌화된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제품을 선택하여 소비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국내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할 때 원산지 이미지를 활용하여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원산지의 제반이론과 대외무역법 원산지 규정과 WTO 규정 그리고 최근 협상이 타결된 한미 FAT 원산지 규정, 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규정 등을 기본으로 하여 원산지 판정제도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원산지 판정에 관한 연구분석을 통해 그 추후 원산지 협상에 따른 대응방안을 검토해 보는데 있다.

II. 원산지 관련 이론적 연구

1. 원산지 및 국가이미지 연구

원산지 규정은 무역 및 투자 그리고 경제통합에 따른 협상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국가 경제분야에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원산지의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다. 아울러 개방화된 세계경제체제의 개편에 따라 소비자들은 다양한 제품을 선택하여 구매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 기준에 의해 제품을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었다. 이 중에서 원산지가 제품의 속성과 평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원산지는 상품의 제조국가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인식 여부에 따라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마케팅 전략에도 영향을 미친다(Hooley and Shipley; 1988).¹⁾ 또한 원산지 정보는 상품의 품질을 평가하는 예측자료로서 이용되며, 특정 상품에 관한 명백한 지식이 없을 때 쓰인다고 한다.(Han, 1994)²⁾ Pisharodi & Pameswaren(1994)은 “국가에 대한 태도”, “상품에 대한 태도”, “특정상품에 대한 태도”로 원산지 이미지를 분류하고 있다. “국가에 대한 태도”는 소비자에 의해 형성된 국가의 일반적인 이미지이고, “상품에 대한 태도”는 소비자들이 그 국가의 상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소비자의 전반적인 이미지를 말한다. 또한 “특정상품에 대한 태도”는 마케팅 및 상품 속성 등에 의해 형성된 특정 상품군에 대한 태도를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원산지는 기업이 마케팅하는 제품이나 상표의 본사가 위치해 있는 국가를 의미하며, 제조국은 실제로 제품의 생산이 일어난 국가로 Johansson et al(1985)³⁾는 정의하고 있다. 원산지는 소비자가 상표명을 추론할 수 있는 국가 즉, 본사국을 지칭하는 것이며, 제품 원산지나 제조국은 최종 조립시점의 국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⁴⁾ 또한 원산지 개념은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한 정의로 세분화 될 수 있다. 즉, 디자인 원산지, 조립원산지, 부품원산지, 기업원산지로 구분할 수 있다(Le et al., 2000).⁵⁾ 특히 Lantz와 Loeb(1996)은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인지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지각된 평가가 이를 대신하는 경우 이를 국가의 스테레오타입 또는 국가이미지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산지 정보는 상품의 품질을 평가하고, 예측하는 자료로 이용하며, 또한 그 상품에 관한 정보가 없을 때 원산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 Hooley, G. and D. Shipley, "A Method for Modelling Consumer Perceptions of country of Origin," *International Marketing Review*, 5, 1988, pp.67-76.

2) Han, C., "Testing the Role of country Image in Consumer Choice Behavior",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24(6), 1994, pp.24-40.

3) Johansson, Johny, Susan P. Douglas and Ikujiro Nonaka, "Assessing the Impact of country-of-Origin on Product Evaluations: A New Methodological Perspective",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2(Nov.) 1985, pp.338-396.

4) 황병일·김범중, “상표 원산지와 생산원산지의 일치성이 제품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산학경영연구* 제15권, 2002, pp.133-152.

5) Li, Zhan G., L. William Murray, and Don Scott, "Global Sourcing, Multiple Country-of-Origin Facets, and Consumer Reaction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47, 2000, pp.121-133.

결국 원산지 이미지와 국가이미지와 동일한 개념으로 정리될 수 있다. Papadopoules & Heslop(1993)에 의하면 국가이미지, 상품이미지, 원산지 등과 관련된 용어를 명백히 하기 위해 “상품-국가 이미지(PCI: Product-Country Image)라는 용어로 일관되게 통일하였으며, PCI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이미지의 핵심이 OC, MC, DC⁶⁾ 등 상품이 실제로 제작된 국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에 있다는 것이다. 이춘수·이장로·서민교(2006)⁷⁾의 연구는 국가이미지와 기업이미지는 상호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한국의 이미지는 기업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긍정적인 한국의 이미지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차원에서 국가이미지를 홍보할 때 글로벌 우량기업을 함께 홍보함으로써 국가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으로써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연구했다. 아울러 문화 차별성이 국가이미지라는 변수를 통하여 조절효과로서 작용할 때 일국의 특징적 문화상품 또는 전통문화를 강조하는 것이 기업이미지에 소비자의 긍정적인 인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분석하였다.

원산지 이미지를 구성하는 결정요인으로 Yaprak & Parameswaran(1986)은 국가에 대한 태도, 상품에 대한 태도, 특정상품에 대한 태도로 구분하였다. 국가에 대한 태도는 정치적 발전, 경제적 발전, 문화적 향상, 미국과의 유사성, 국민의 교육정도, 국민의 친절도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상품에 대한 태도는 일반상품의 혁신성, 디자인, 명성, 기술 등을 포함하고, 특정 상품에 대한 태도는 특정상품군의 기능, 상품의 디자인, 가격에 대한 만족도, 상품에 대한 신뢰성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Nagashima(1977)는 국가이미지를 기업의 활동에 국한하지 않고 전반적인 이미지 구성요인으로 보고 가격 및 가치, 서비스 및 엔지니어링, 광고 및 평판, 디자인과 스타일, 소비자 특성 등 5가지 요인을 구성요소로 보았으며, White(1979)는 값비싼 가격, 가격, 기술력, 품질, 숙련도, 발명능력, 선택, 서비스능력, 광고, 내구성, 신뢰성, 상표인지 등 12개 요인을 사용하였다. Kaynak & Kucukeniroglu(1992)는 국가 이미지 요소를 크게 사회, 경제, 문화, 정치적 속성 등의 인지적 요소와 국가나 국민 그리고 제품에 대한 접촉, 연상, 과거경험 등을 통한 구매자의 태도 및 감정으로 형성되는 감정적 요소로 구성된다고 연구하였으며, Martin & Eroglu(1993)은 국가 이미지와 원산지 이미지를 기초로 하여 3개 요인을 추출했는데 정치적 차원, 경제적 차원, 기술적 차원으로 구성했다.⁸⁾

원산지 규정에 대한 연구로서, 최근 한국을 포함하는 지역경제통합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한미 FTA가 체결됨으로써 지역주의와 세계화의 괴리를 극복하고 나아가 남북한의 지역갈등을 완화하여 평화와 안정이라는 국제 사회의 목표달성에 기여하는데 원산지 규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조우길·장홍훈(2003)의 연구는 원산지 규정에 대한 연구를 비대칭적 우너산지 규정과 원산지 확장을 채택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세계공동체의 가치 있는 목표(평화증진, 비대칭적 요소 풀의 격차 완화 등)를 달성할 수 있음을 제언하고 있다.⁹⁾

6) Origin Country(OC), Made-in Country(MC), Designed-in Country(DC)

7) 이춘수·이장로·서민교, “한국 국가이미지와 기업이미지간의 상호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통상정보연구」 제8권 제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6, pp.323-341.

8) 황병일, “원산지 이미지의 구성요인이 제품평가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광고학연구 제10권 제1호, 1999, pp.135-153.

2) 원산지 효과

원산지 효과는 단순히 제품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그 제품을 생산한 국가의 후광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제품에 대해 잘 모를 때는 국가 이미지가 후광효과(halo effect)로 작용하거나, 소비자가 그 국가나 제품에 대해 친밀한 경우에는 국가이미지가 제품속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념을 요약해 준다.(Han, 1989).¹⁰⁾ 원산지 효과를 측정하는데 있어 단순히 제품관련 요인만을 측정하기 보다는 국가의 일반적인 이미지와 제품의 일반적인 이미지를 달리 고려하여 이들 요인이 특정 부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Saeed(1994)는 일반소비자 보다는 산업재소비자 구매시 소비자들은 보다 풍부한 정보와 경험을 토대로 원산지에 관한 인지구조를 형성하며, 원산지는 합리적, 인지적 단서로 사용되며 제품의 내재적 및 외재적 속성에 대한 지각과 구매의도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Ahmed & El-adraoui(1994)도 원산지가 구매담당자의 제품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디자인 원산지, 조립원산지, 상표명, 가격, 보증 등의 다중단서를 사용하여 연구한 결과 선진국은 산업제품의 디자인과 생산국으로서 신흥산업국보다 우수하게 평가되었으며, 신흥산업국은 디자인 원산지보다 산업제품의 조립원산지로서 보다 좋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효과와 경제발전 사이는 서로 관계가 있으며, 개발도상국 제품의 경우, 선진국 제품보다 열등한 것으로 평가되며, 제품평가와 관련된 연구에서도 특정국가의 제품에 대해 가지는 이미지에 따라 제품평가가 달라진다는 연구도 있다(Kaynak & Kana, 2000). 이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 미국, 서유럽 제품들은 값비싸고, 우아하고, 좋은 스타일과 외양을 가질 것이라고 지각되는 반면에 러시아 제품은 신뢰성, 내구성, 서비스 등이 열악하다고 지각된다. 이것은 중국, 러시아, 동유럽 제품에 대해서 부정적인 지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소비자들이 가지는 특성 국가에 대한 이미지나 지각 정도에 따라 제품평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결과들을 통해 원산지 효과가 각 국가마다 특정 국가에 대해서 다른 효과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¹¹⁾

김영옥·오미영(2005)¹²⁾은 원산지 이미지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 하였다. 즉, 원산지 이미지가 제품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제품 태도가 구매의도에 영향을 준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원산지 이미지가 상품태도 및 구매의도에 대해서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 황병일·김범중(2002)의 연구에 의하면 제품 선호도에 대한 원산지 효과는 모든 제품 범주에서 대체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제품선호도에 있어 상표원산지와 생산 원산지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uni-national 제품과 bi-national 제품을 비교해 볼 때 상표의 본사국의 Uni-national 제품이 생산국을 달리하는 bi-national 제품보다 선호된다는 점과 선진국과 한국을 고려한

9) 조우길·장홍훈, "지역경제통합과 원산지 규정의 효력", 「국제상학」 제18권 제4호, 한국국제상학회, 2003, p.253.

10) Han C. M., "Country Image: Halo or Summery Construct?",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6(may), 1989, pp.222-229.

11) 김재휘·김성환·김지호, "원산지에 대한 고정관념과 제품평가의 관계에서 인과적 판단의 매개효과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2006, 제7권 제2호, 2006, pp.227-247.

12) 김영옥·오미영, "애국심, 소비자 자민족 중심성향, 원산지 이미지, 제품에 대한 태도, 구매의도간의 관계와 경쟁관계에 대한 인식이 이들 변수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광고학연구* 제16권 제2호, 2005, pp.73-99.

상표원산지과 생산원산지간의 정보일치성 측면에서 볼 때 한국상표와 제품이 선진국 상표와 제품 보다 선호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상표원산지와 생산원산지 정보의 일치성이 제품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모든 제품범주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선진국보다 높게 나타나 국내에서 외국산 제품에 비하여 일반 소비자의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평가가 높아 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높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운영·강계삼(2006)¹³⁾의 연구는 일본 내 한류가 원산지 효과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국가이미지는 크게 개선되었으며, 한류 접촉 후에는 소득계층과 학력계층에서 개선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한류가 국가이미지와 제품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Ⅲ. 원산지 규정에 관한 연구

1.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규정

1) 대외무역법 원산지

원산지표시는 특정물품의 원산지를 당해물품에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로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상품정보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국내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원산지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수출 또는 수입하는 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공정 수출입 행위를 근절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원산지(origin of goods)는 특정물품이 성장했거나 생산, 제조, 가공된 지역이나 국가를 말하며, 수출입물품의 국적을 의미한다.¹⁴⁾ 아울러 원산지는 “산업자원부 장관이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¹⁵⁾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2000.12.29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¹⁶⁾ 이와 같은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 : ROO)은 회원국이 상품의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는 데 법률, 규정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적인 관정이라 할 수 있으며 특정 제품의 국적인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제반 기준 및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말한다.¹⁷⁾ 그리고 원산지 표시방법에는 한국산 원산지

13) 이운영·강계삼, "일본내 한류가 원산지 효과에 미친 영향", 「통상정보연구」 제8권 제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6, pp.231-254.

14) 김석철·이제홍·박희주, 『최신대외무역법해설』, 청목출판사, 2005, p.208.

15)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할 물품을 공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대외무역법시행령 제52조)

16) 대외무역법 제23조의 제1항

17) 정인교 공저, 『글로벌시대의 FTA전략』, 도서출판 해남, 2005.

표시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볼 수 있는 국내생산물품은 “한국산”, “韓國産”, “Made in Korea”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다.¹⁸⁾

2) 원산지 판정기준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에서는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 한다(대외무역법 제24조 제2항). 원산지 판정기준으로 수출입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 또는 생산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¹⁹⁾로 보는 기준으로 주로 천연생산품 또는 천연생산품으로 물품의 전부를 한나라에서 제조한 상품에 적용된다. 그리고 실질적 변형을 수행한 경우의 물품으로서 물품의 실질적 변형을 하여 당해국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수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과정에 2개국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을 수행한 국가를 당해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대외무역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및 대외무역법시행규정 제6-3-1조 제2항).

대외무역법에 의하면 실질적 변형이 행해지는 경우 세번변경기준(HS 6단위변경)이 적용되고, 예외적으로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주요 부품기준 또는 주요공정기준)이 보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부가가치기준은 당해 물품의 제조·생산에 사용된 원료 및 구성품의 원산지별 가격누계가 당해 물품의 수입가격(FOB가격기준)에서 점하는 비율로 하며(대외무역법시행규정 제6-3-1조 제4항 및 제6항), 부가가치기준은 세번변경이 실질적 변형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주요 부품이나 주요 공정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로 사용되며, 적용하는 부가가치비율은 나라마다 상이하다. 가공공정기준은 제조 공정 중 특정한 공정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부품을 사용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기준으로 부가가치기준을 보완하는 기준이다. 따라서 부가가치비율이 35% 이상 생산되는 국가가 없거나 2개국 이상인 경우에 주요부품(공정)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율이 높은 국가를 원산지로 본다(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6-2). 그리고 당해 주요부품의 원료 및 구성품의 부가가치 생산에 최대로 기여한 국가가 당해 완제품의 부가가치비율 기준 상위 2개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가를 원산지로 보며, 당해 완제품의 부가가치비율 기준 상위 2개국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완제품을 최종적으로 제조한 국가가 원산지가 된다.²⁰⁾ 그러나 수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과정에 2개국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 단순한 가공을 수행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여서는 안 된다.²¹⁾

18)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1의 제2,3항

19)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및 대외무역법시행규정 제6-3-1조 제1항

20)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1조 제5항

21)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1조 제7항

2. WTO상 원산지 규정

1) WTO 원산지

원산지 규정이란 회원국이 상품의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는데 법률, 규정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적인 판정으로 정의된다(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제1조의 1). 이와 같은 WTO 원산지 규정은 원산지 규정이 1994년도 GATT에 따른 회원국의 권리를 무효화하거나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원산지 규정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관행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산지 규정과 관련하여 회원국의 법률, 규정,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법적 결정 및 행정적 판정을 1994년 GATT 제10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처럼 그리고 이 규정에 따라 공표된다.²²⁾

수출입상품에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은 국내상품 여부의 판정에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보다 더욱 엄격하지 아니하며, 관련 상품의 제조업자들간의 제휴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회원국간에 차별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산지 규정은 자체로서 국제무역을 제한하거나 왜곡 또는 교란시키는 효과를 초래하지 아니한다. 즉 원산지 규정은 원산지국 판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거나 제조 또는 가공과 관련이 없는 특정 조건의 충족을 요구하지 아니한다.²³⁾

2) WTO 원산지 판정 규정

WTO 원산지 규정은 회원국 상품의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는 법률, 규정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목적을 위하여 동등하게 적용된다. 원산지 규정에 따라 특정 상품의 원산지로 판정되는 국가는 동 상품이 완전히 획득되어진 국가이거나 또는 둘 이상의 국가가 상품생산에 관련되어 있을 경우 최종적인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출입상품에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은 국내 상품 여부의 판정에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아야 하며, 관련 상품 제조업자들 간의 제휴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회원국간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²⁴⁾

그리고 원산지 판정에 관하여 수출자, 수입자 또는 정당한 사유를 가진 사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 상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모든 필요한 요소가 제출된 경우 가능한 한 조속히 판정요청이 있은 후 150일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그리고 원산지 규정을 포함하여 판정의 기초가 된 사실과 조건이 비교가능한 상태로 남아있을 경우 이러한 판정은 3년 동안 유효하다.

원산지 제품의 판정에 있어서 작업계획은 조화작업 계획을 적시에 완결하기 위하여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부 또는 유로 표시된 품목분야를 기초로 작업이 이루어진다. 기술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

22)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1994년 GATT 원산지규정)

23)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제2조 (d)

24)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제3조의 나. 다

한 조화된 정의를 개발한다.²⁵⁾ 한나라에서 완전하게 획득하여졌다고 간주되는 상품과 동 작업은 가능한 한 세부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실질적 변형 측면의 관세분류상의 변경에 있어서 기술위원회는 실질적 변형기준을 기초로 하여 특정상품 또는 상품분야에 대한 원산지규정을 개발할 경우 관세 소호 또는 호의 사용을 그리고 적절한 경우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품목분류체계 내에서 최소한의 변경을 고려하여 상세히 기술한다. 그리고 보완적인 기준에 있어서 동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사용만으로는 실질적인 변형을 표시하지 못하는 각 품목분야 또는 개별상품의 범주에 대하여 기술위원회는 특정 상품 또는 상품분에 대한 원산지 규정의 개발시 실질적인 변형기준을 기초로 하여 증가비율²⁶⁾ 및/또는 생산 또는 가공공정²⁷⁾을 포함한 다른 요건을 보완적 또는 배타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것을 고려하고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3. 한미 FTA 원산지 규정

1) 한미 FTA 원산지 협상

원산지규정에 대한 법률을 보면 한국은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에 규정되어 적용되고 있으며, 미국의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법령으로는 연방무역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 관세법(Tariff Act) 및 NAFTA 협정 등이 있다. 또한 특정품목에 관한 법령으로는 자동차라벨링법(American Automobile Labelling Act), 구매법(Buy American Act) 등과 섬유제품과 관련된 섬유제품식별법(Textile Fiber Products Identification ACT), 울제품 라벨링법(The Wool Products Labelling ACT), 모피제품라벨링법(Fur Products Labelling ACT) 등이 있다. 이와 같은 개별법령에 의해 규제되는 이외의 물품은 연방무역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에서 규정하고 있다. 연방무역거래위원회법은 미국 원산지 표시를 하는 물품의 허위·오용표시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연방무역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에게 부여하고 있다. 즉, FTC는 시장에서 불공정한 행위나 기만적인 행위를 규제하는 책임을 FTC법에서 부여받아 미국 원산지 표시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규제 및 단속하고 있다.²⁸⁾ 이상과 같이 미국은 원산지 규정을 각각의 법률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한미 FTA 체결 시에 자국의 원산지 기준이 있지만 특례를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FTA는 회원국 간의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통하여 규모의 경제와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하는 경제통합의 한 유형으로서 FTA의 회원국은 협정에 의해 상호교역 증대를 꾀함과 아울러 비회원국에는 배타적으로 적용하여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상이다.

25)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제9조의 2 나

26) 증가기준이 규정된 경우 원산지 규정에 동 비율 산정방법을 명시.

27) 생산 또는 가공공정 기준이 규정된 경우 관련 물품의 원산지를 부여하는 공정이 정확하게 명시.

28) 채형복, “한국산 내국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의 법적 쟁점”, 「관세학회지」 제6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2005, p.78.

한·미 FTA 협정안에 의하면 각 당사국은 원산지 상품에 대한 규정을 내리고 있는데, 특히 특혜원산지 판정기준 중²⁹⁾ 완전생산기준, 실질적 변형기준 등 원산지 판정의 일반원칙은 협정문에서 규정하고 있다.³⁰⁾ 실질적 변형기준에 대한 합의는 양국에서 최종 생산과정을 거친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인정하되, 구체적인 판정기준으로 품목별 특성에 따라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또는 주요 공정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각 품목에 대한 개별적 원산지 판정기준은 부속서에 규정하고 있다.

2) 분야별 협상

미소기준(De Minimis)의 협상은 한미 양국은 제품의 원산지 판정에서 역외산 재료(non-originating material)가 양국이 합의한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제품 가격의 10% 미만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원산지를 인정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일부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미소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부속서에 규정하고 있다.³¹⁾

대체 사용 가능한 재료 및 물품의 원산지 판정 특례를 인정하였다. 특히 석유·고철 등과 같이 대체 사용가능한 재료 및 물품³²⁾을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 판정의 간소화 및 무역편의 증진을 위해 선입선출법·후입선출법 등과 같은 재고관리법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하는 방식 도입하여 규정하였다. 그리고 대체가능물품을 혼입 보관하더라도 위생검역(SPS), 원산지표시 등에 대해서는 각국이 국내법령에 따라 별도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 양국간 인식 일치하였다.

그리고 재제조 물품에 관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한미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중고품에서 회수한 부품을 조립하여 최종제품을 만들었을 경우, 이를 재제조(remanufactured)라고 규정하였다. 중고품에서 회수한 부품에 대한 원산지를 인정함으로써 재생부품 등 자원 재활용의 촉진을 도모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재제조물품이 되기 위해서는 ① 신품과 유사한 제품수명을 가져야 하며, ② 신품과 유사하다는 공장보증기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시켰다. 즉,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광학·의료기계가 재제조물품의 대상이 되는바, 상기 제품군들이 상업적인 관점에서 재제조나 판매를 통한 이윤실현이 가능하기에 선정되었으며, 또한 재제조물품의 성능, 안전성, 환경요건 충족 여부는 각국이 개별법령으로 심사기준과 절차를 정해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미 FTA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인 농산물 원산지 기준은 신선 농산물은 완전생산기준에 근접한 원산지 기준 적용하였다. 즉, 화훼, 채소, 과실, 곡물류는 당사국에서 재배하고 수확한 농산물에 대해서만 특혜관세 원산지로 인정하고 있다.³³⁾ 아울러 닭고기는 완전생산기준, 나머지 육류는 제3국산 생축을

29) http://www.mofat.go.kr/mofat/mk_a004/mk_b020/1225522_562.html(2007.5.29)

30) 한미 FTA 상세설명자료, 관계부처합동, 2007.5.(공개자료)(본 자료는 4.4(수) 한미 FTA 협상결과를 요약하여 공개한 “한미 FTA 분야별 최종협상결과”의 내용중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만을 절취하여 인용하였음)

31) 미소기준적용제외품목(3류:어류, 4류:낙농제품, 7류:채소류, 1006, 11류:쌀제품, 0805, 2009.11-39:감귤류, 주스류, 8류, 20류:복숭아, 배, 살구류, 15류:동식물유지, 17류:설탕)

32) 대체사용가능한 재료나 물품 : 성질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여 상업목적상 서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재료나 물품

33) 캐나다, 멕시코 등 제3국에서 재배하거나 수확한 작물을 미국에 수입한 후 우리나라에 재수출하면 원산지 불인정

수입해 도축한 경우도 원산지를 인정(도축국 기준)하고 있다. 그러나 FTA 원산지기준은 수입가능성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협정문에 명시함으로써 위생·검역 조건을 우회한 수입 우려 해소한다는 점에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가공 농산물 중 민감한 품목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즉, 제3국에서 수입한 쌀을 제분한 쌀가루, 또는 쌀가루가 들어간 가공식품, 전쌀은 원산지 불인정하기로 하였으며, 제3국에서 수입한 인삼을 가공한 제품은 원산지 불인정하였다. 또한 제3국에서 수입한 과일, 견과류, 채소를 단순 가공하여 냉동하거나 염수 등에 저장·처리한 경우 원산지 불인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자동차 제품의 원산지 기준은 자동차 제품에 대해 순원가법(Net Cost)과 공제법(Build-Down)/집적법(Build-Up)을 기업이 선택적으로 사용토록 협정문에 명시하였다. 그리고 부가가치 수준은 순원가법 35%, 집적법 35%/공제법 55%에서 합의하고 품목별 원산지기준 부속서에 명시³⁴⁾하였다. 기업이 원산지 기준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순원가법만 사용할 경우 예상되는, 방대한 회계자료 작성에 따른 인력 및 비용 지출, 장시일의 조사에 따른 영업지장, 반덤핑 조사자료로 활용될 가능성 등의 우려를 해소하게 되었다. 자동차업계의 global sourcing은 일반적인 추세로, 금번 협상에서는 이러한 경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부가가치 수치를 결정하였다.

기타 공산품 원산지 기준으로서 화학제품은 양국의 입장을 공히 반영하여 미국의 주요공정기준과 우리의 세번변경기준을 모두 인정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신발의 경우 우리 주력 수출품에는 역외산 갑피(upper) 사용이 인정되나, 일부 예외품목에 대하여만 역내산 갑피 요건을 적용하였다. 기계, 전기·전자, 철강제품은 양국의 수출입 주력품목으로 교역확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원산지 기준을 적용하기로 합의. 이에 따라 세번변경기준을 원칙으로 채택하고 양국 산업의 민감성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부가가치 기준 적용하고 있다. 특히 섬유·의류에 대한 원산지 기준³⁵⁾은 섬유분과에서 별도로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섬유협정문 부속서에 규정하고 있다.³⁶⁾

3) 원산지 협정문의 준수 내용

다음은 원산지 협정에 대한 기본적인 주요 내용으로서 FTA협정 원산지 규정의 일반적인 규정 내용을 담고 있다. 누적기준 기준으로서 역내산(미국산 및 한국산) 원부자재의 교역활성화를 위하여 상대국

34) 집적법 = $\frac{\text{원산지 재료}}{\text{조정가치}}$ 공제법 = $\frac{\text{조정가치} - \text{비원산지 재료}}{\text{조정가치}}$

순원가법 = $\frac{\text{순원가} - \text{비원산지 재료}}{\text{순원가}}$

순원가 : 총비용 - (마케팅 비용+로얄티+운송비용 등)

35) 원사기준을 채택하였다. 원사기준(yarn-forward rule)이란, 협정 당사국산 ‘실’을 사용하여 직물을 제직(또는 편직)하고 직물 및 의류 등 섬유 완제품을 제단·봉제하여야만 동 제품의 원산지를 인정하는 제도로, NAFTA를 비롯하여 미국이 체결한 FTA에서 고수하여 온 원산지 원칙임.

36) [http://www.mofat.go.kr/mofat/fta/kor/k19.pdf\(2007.5.25](http://www.mofat.go.kr/mofat/fta/kor/k19.pdf(2007.5.25) 발췌)

의 원부자재를 사용한 경우 이를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누적기준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세트 물품인 경우, 세트를 구성하는 비원산지 상품 가격이 세트가격의 15% 이하인 경우에는 세트전체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간접재료인 경우, 제품의 검사나 제품생산과 관련된 장비의 유지 등에 사용되는 연료, 장구, 부품 등 간접재료는 원산지 판정을 하는데 고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직접운송의 경우, 한미 양국이 아닌 제3국(경유국)에서 ①단순하역 작업이나 제품의 보존이나 운송에 필요한 작업이 아닌 실질적인 가공작업이 이루어진 경우나 ②세관당국의 통제하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산지제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도록 합의하였다.

4. 남북교역물품 원산지 확인 규정

남북교역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에 대한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제26조)과 동법시행령(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내용을 남북합의에 의거 2003년 9월 29일 고시하였다. 이 합의서의 목적은 남한과 북한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³⁷⁾ 이 고시는 남한과 북한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으로 하며, 원산지의 판정기준으로 다음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남북교역물품의원산지확인에관한고시 제5조 제1항). 남북한 거래 물품의 전부가 남한 또는 북한에서 생산·가공·제조된 물품에 한하며, 그리고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동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남한 또는 북한에서 수행된 경우에 한다. 그리고 원산지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원산지가 북한인 경우에는 "Made in DPRK(Gaeseong), 북한산(개성)" 등을 표시하며, 원산지가 남한인 경우에는 "Made in Korea" 또는 한국산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³⁸⁾ 특히 개성공단에서 반입되는 물품으로서 원산지가 북한으로 판정된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 교역물품과 구분하기 위해서 Gaeseong(개성)이라는 표시가 포함되어야 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³⁹⁾

그러나 남북한 원산지 합의서 고시에 따르면 남북한 모두에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은 내용을 고시하고 있다.⁴⁰⁾ 어떤 물품이 제3국에서 생산되어 남한 또는 북한을 단순 경유한 물품과 남한 또는 북한에서 단순포장, 상표부착, 물품분류, 절단, 세척 또는 단순한 조립 작업만을 거친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남한 또는 북한에서 운송 또는 보관에 필요한 작업만을 거칠 물품과 남한 또는 북한에서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작업만을 거친 물품이다. 축산제품인 경우 남한 또는 북한에서 도축작업만을 거친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제품과 남한 또는 북한에서 건조, 냉장, 냉동, 제분, 염장,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 포함), 껍질 및 씨 제거작업만을 거친 물품

37) 남북교역물품의원산지확인에관한고시 제1조

38) 2005년 3월 23일 개정(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39) 김동균, "남북한 교역활성화를 위한 원산지제도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6권 제4호, 한국관세학회, 2005, p.92.

40) 남북교역물품의원산지확인에관한고시 제5조 제2항

등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원산지에 대한 확인기관으로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확인의 요청과 통보를 담당하는 기관은 남한은 관세청이며 북한은 민경련으로 하고 있다.

또한 북한산 제품의 실질적 변화의 기준에 대한 미국의 원산지 표시제도의 기준을 관세법에 의하면 최종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그리고 모든 부품이 외국산일 경우에도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해당 제조국을 원산지로 한다고 하였다.⁴¹⁾ 즉, 북한 물품이 한국으로 운송되어 일부 가공을 거쳐 한국산으로 표시되어 미국에 수출되어도 한국에서 실질적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북한산으로 취급될 것이고, 반대로 북한산 원료나 반제품이 한국에서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정도로 가공되었으면 한국산으로 취급받게 될 것이다.⁴²⁾

한미 FTA 체결에 개성공단의 원산지 규정에 대한 협정에서는 협상문에 명시적으로 ‘개성 공단’ 생산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역외가공지역은 향후 설치될 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지정 예정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 역외지역에서 가동중인 공단은 개성 공단이 유일한 상황에 비추어 향후 개성 공단이 제일 먼저 역외가공지역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개성공단’이란 명칭을 협정문상에 특정화 하면 WTO협정상의 최혜국대우원칙(MFN)에 위배 될 소지가 있다는 법률적 검토 의견을 또한 반영한 것이다. 단지 협상문에서는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틀만 마련했을 뿐이다.⁴³⁾

IV. 원산지 판정과 대응방안

1. 원산지 판정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 판정에 대한 분석을 우리나라 대외무역법과 한미 FTA 협상 결과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대의 무역법상의 원산지 판정기준을 보면 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 또는 수입물품 등의 원산지판정을 할 수 있다(대외무역법 제24조 제1항의 7). 수입 또는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기준은, 완전생산물품·실질적 변형 및 최소가공의 기준 등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있다(대외무역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및 제2항).

실질적 변형을 수행한 국가에 대해 원산지를 부여하고 있다. “실질적 변형”이란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행하여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으로서, 당해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41) 한국무역협회, 한국산원산지판정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 2004.12.

42) 조원길, “남북 IT경협과 원산지 표시의 문제분석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6권 제4호, 한국관세학회, 2005, p.244.

43) <http://www.mofat.go.kr/mofat/fta/kor/k19.pdf>(2007.5.25 발췌)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는데, 수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과정에 2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을 수행한 국가를 당해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대외무역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및 규정 제6-3-1조 제2항). 즉,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 당해 물품이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생산공정을 최종적으로 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기준이다.⁴⁴⁾ 수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과정에 2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단순한 가공”을 수행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여서는 안 된다. 여기서 “단순한 가공”이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가공활동으로서, 최소가공활동을 수행하는 국가에는 원산지를 부여하지 않는다(대외무역법시행령 제1항 및 규정 6-3-1조 제7항).

그리고 원산지판정기준 특례⁴⁵⁾로서 ①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에 사용되는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로서 기계등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정상적인 부속품, 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의 원산지는 당해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의 원산지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② 포장용품의 원산지는 당해 포장된 내용품의 원산지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포장용품과 내용품을 각각 별개로 구분하여 수입신고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포장용품의 원산지는 내용품의 원산지와 구분하여 결정한다. ③ 촬영된 영화용필름에 대하여는 그 영화제작자가 속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한·미 FTA 협정안에 의하면 각 당사국은 원산지 상품에 대한 규정을 내리고 있는데, 특히 특혜원산지 판정기준 중 완전생산기준, 실질적 변형기준 등 원산지 판정의 일반원칙은 협정문에서 규정하고 있다. 실질적 변형기준에 대한 합의는 양국에서 최종 생산과정을 거친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인정하되, 구체적인 판정기준으로 품목별 특성에 따라 세번변경기준⁴⁶⁾, 부가가치기준⁴⁷⁾ 또는 주요 공정기준⁴⁸⁾ 등으로 원산지 판정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완전생산기준은 ① 양국의 영역에서 채배되고 수확된 식물 ② 양국의 영역에서 나고 자란 동물 ③ 양국영역에서 동물로부터 획득한 상품 ④ 양국의 영역에서 어로행위, 양식 등을 통하여 획득한 상품 ⑤ 양국의 영역에서 채취한 광물 및 천연 자원 ⑥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양국의 영역 밖의 바다, 해저 및 해저토양에서 잡히거나 채취된 어류 및 상품

44) ① 당해물품에 제조·사용된 원료 및 구성품의 부가가치의 35% 이상을 생산 또는 최초로 공급한 국가 ② 위의 규정에 의한 국가가 없거나 2개국이상인 경우에는 주요부품을 생산한 국가 또는 주요 공정이 이루어진 국가.(주요부품에 대하여는 ① 당해 주요부품의 원료 및 구성품의 부가가치생산에 최대로 기여한 국가가 당해 완제품의 부가가치비율 기준 상위 2개국중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당해국가, ② 당해 주요부품의 원료 및 구성품의 부가가치생산에 최대로 기여한 국가가 당해 완제품의 부가가치비율 기준 상위 2개국중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당해 완제품을 최종적으로 제조한 국가를 원산지로 본다(제6-3-1조 제5항).)

45) 대외무역법시행규정 제6-3-2조

46) 세번변경기준 :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경우 수입원료의 세번(HS번호)과 제품의 세번이 일정단위(예:HS 2단위, 4단위, 6단위) 이상 변경되어야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

47) 부가가치기준: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경우 가공과정에서 일정수준 이상(예: 45%)의 부가가치가 발생해야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

48) 주요공정기준: 화학반응, 정제공정, 블렌딩공정 등 특정한 공정을 거쳐 생산된 경우에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

<표 1> 원산지 판정기준 비교

구분	대외무역법	한미 FTA	WTO	남북교역물품
원전생산물품	수출입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 또는 생산된 물품으로 주로 천연생산물품 이러한 천연생산물품으로 제조·가공한 물품 -당해영역에서 생산한 광산물, 농산물 및 식물성 생산물 -당해국영역에서 번식, 사육한 산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 -당해국 영역에서 수렵, 어로로 채포한 물품 -당해국 선박에 의하여 채포한 어획물, 기타 물품 -당해국에서 제조, 가공·공정 중에 발행한 설 -이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	-양국의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 -양국의 영역에서 나고 자란 동물 -양국영역에서 동물로부터 획득한 상품 -양국의 영역에서 어로행위, 양식 등을 통하여 획득한 상품 -양국의 영역에서 채취한 광물 및 천연 자원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양국의 영역 밖의 바다, 해저 및 해저토양에서 잡히거나 채취된 어류 및 상품 -우주공간에서 채취되어 양국의 영역에서 가공된 상품 -중고 제품으로부터 파생되고 양국의 영역에서 재제조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생제품	-원산지로 판정되는 국가는 동 상품이 완전하게 획득되어진 국가이거나 또는 둘 이상의 국가가 상품 생산에 관련되어 있을 경우 최종적인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국가로 규정 -수출입상품에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은 국내상품 여부의 판정에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아야 하며, 관련 상품 제조업자들 간의 제휴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회원국간에 차별이 없어야 함	-원산지의 판정기준은 남북한 거래 물품의 전부가 남한 또는 북한에서 생산·가공·제조된 물품에 한함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동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남한 또는 북한에서 수행된 경우에만 한함 -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은 내용은 어떤 물품이 제3국에서 생산되어 남한 또는 북한을 단순 경유한 물품과 남한 또는 북한에서 단순포장, 상표부착, 물품분류, 절단, 세척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만을 거친 물품 -남한 또는 북한에서 운송 또는 보관에 필요한 작업만을 거친 물품과 남한 또는 북한에서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작업만을 거친 물품 -축산제품인 경우 남한 또는 북한에서 도축작업만을 거친 쇠고기, 돼
실질적 변형	세번변경기준	제조·가공과정에서 사용된 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의 완제품을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기준	세번변경기준 :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경우 수입원료의 세번(HS번호)과 제품의 세번이 일정단위(예:HS 2단위, 4단위, 6단위) 이상 변경되어야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	-실질적 변형 측면의 관세분류상의 변경은 특정상품 또는 상품분야에 대한 원산지규정을 개발할 경우 관세 소호 또는 호의 사용을 그리고 적절한 경우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품목분류체계 내에서 최소한의 변경을 고려 -특정 상품 또는 상품분에 대한 원산지 규정의 개발 시 실질적인 변형 기준을 기초로 하여 증가비율 및/또는 생산 또는 가공공정을 포함한 다른 요건을
	부가가치기준	당해 물품의 제조·생산에 사용된 원료 및 구성품의 원산지별 가격누계가 당해 물품의 수입가격(FOB)에서 접하는 비율로 함 -당해 제조·생산국이 외국으로부터 수입조달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은 각기 수입단위별 FOB 가격 -당해 제조·생산국에서 국내로 공급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을 각기 구매단위별 공장도 가격	부가가치기준: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경우 가공과정에서 일정수준 이상(예: 45%)의 부가가치가 발생해야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	
	가공	-부가가치비율이 35% 이상 생산되는 국가가 없거나 2	주요공정기준: 화학반응, 정제공정, 블렌딩공정 등 특정	

<p>공정 기준</p>	<p>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주요 부품(공정)이 차지하는 부가가치의 비율이 높은 국가를 원산지로 봄 -완제품 부가가치비율 기준 상위 2개국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완제품을 최종적으로 제조한 국가(주요부품기준) -가축의 경우 출생국과 사육국이 다를때 6개월 이상 사육된 경우에는 사육국을 원산지로 함, 그 기간이 미만인 경우 출생국으로 함 (주요공정기준)</p>	<p>한 공정을 거쳐 생산된 경우에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p>	<p>보완적 또는 배타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것을 고려하고 자세히 기술</p>	<p>지고기 등 육류제품과 남한 또는 북한에서 건조, 냉장, 냉동, 제분, 염장,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 포함), 껍질 및 씨 제거작업만을 거친 물품</p>
<p>기타</p>	<p>-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에 사용되는 부속품으로 당해 기계 등과 함께 수입되어 판매되는 표준부속품의 원산지는 당해 기계 등의 원산지와 동일한 것으로 봄 -포장용품의 원산지는 포장된 내용품의 원산지와 동일한 것으로 봄, 관세율표상 포장용품과 내용품이 별개의 수입품으로 분류되는 품목은 별도의 원산지로 적용 -촬영된 영화용필름에 경우 영화제작자가 속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봄</p>	<p>-미소기준적용제외품목(3류:어류, 4류:낙농제품, 7류:채소류, 1006, 11류:쌀제품, 0805, 2009.11-39:감귤류, 주스류, 8류, 20류:복숭아,배,살구류, 15류:동식물유지, 17류:설탕 -대체사용가능한 재료나 물품 : 성질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여 상업목적상 서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재료나 물품 -선입선출법 : 먼저 구입한 재료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보고, 그 먼저 사용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쇠고기는 도축국 기준을 적용해도 위생·검역조건에 의해 캐나다산 생우를 미국에서 도축한 경우 수입이 금지, 멕시코산 생우는 미국 내에서 100일 이상 사육 후 도축해야 수입이 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 사육국 기준 적용과 동일 -원사기준(yarn-forward rule)이란, 협정 당사국산 ‘실’을 사용하여 직물을 제직(또는 편직)하고 직물 및 의류 등 섬유 완제품을 재단·봉제하여야만 동 제품의 원산지를 인정하는 제도로, NAFTA를 비롯하여 미국이 체결한 FTA에서 고수하여 온 원산지 원칙임.</p>		

자료 : 연구자 작성

⑦ 우주공간에서 채취되어 양국의 영역에서 가공된 상품 ⑧ 중고 제품으로부터 파생되고 양국의 영역에서 재제조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생제품에 대하여 협상하였다.

그리고 석유·고철 등과 같이 대체 사용가능한 재료 및 물품⁴⁹⁾을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 판정의 간소화 및 무역편의 증진을 위해 선입선출법⁵⁰⁾·후입선출법⁵¹⁾ 등과 같은 재고관리법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하는 방식 도입하여 규정하였다. 닭고기는 완전생산기준, 나머지 육류는 제3국산 생축을 수입해 도축한 경우도 원산지를 인정(도축국 기준)하고 있다.⁵²⁾

2. 대응방안

엄격한 원산지 규정은 시장 개방에 대한 취약산업의 반발을 무마하는데 흔히 사용된다. 경제통합으로 관세가 인하되더라도 다른 회원국 기업들이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수입이 급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원산지 규정은 불법 위회수입을 방지하고, 회원국간 교역을 촉진시키며,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을 유도하는 목적이 있으나 많은 FTA에서 무역 자유화의 효과를 상쇄시키는 수입제한적 조치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한미 FTA 협상안에서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과 동일하게 특혜관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상문에서는 개성공단 생산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은 명시된 것은 없다. 그리고 역외가공지역은 추후에 북한의 변화에 따라 지정될 것으로 예상하나 지정요건이 엄격해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섬유부분은 원사기준을 채택하였다. 원사기준(yarn-forward rule)이란, 협정 당사국산 ‘실’을 사용하여 직물을 제직(또는 편직)하고 직물 및 의류 등 섬유 완제품을 재단·봉제하여야만 동 제품의 원산지를 인정하는 제도로, NAFTA를 비롯하여 미국이 체결한 FTA에서 고수하여 온 원산지 규정의 원칙이다. 따라서 특히 섬유부분에 있어서는 중국과 북한 등에서 생산된 물품이 국내에서 가공후 수출했을 경우 특혜관세의 혜택을 받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와 같은 수입제한적 요소가 있다고 할지라도, 원산지 규정을 여기면서 수출입이 되었을 때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기술수준이 향상되고 선진국으로 진입함으로써 우리나라 제품의 원산지 보호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미 FTA 타결로 관세가 인하되어 미국산 제품의 수입증가가 될 것이고, 중국산 제품의 수입증가는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원산지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무역업자와 수입품 판매업자는 그 물품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엄격하게

49) 대체사용가능한 재료나 물품 : 성질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여 상업목적상 서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재료나 물품

50) 선입선출법 : 먼저 구입한 재료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보고, 그 먼저 사용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51) 후입선출법 : 나중에 구입한 재료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보고, 나중에 사용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52) 쇠고기는 도축국 기준을 적용해도 위생검역조건에 의해 캐나다산 생우를 미국에서 도축한 경우 수입이 금지, 멕시코산 생우는 미국 내에서 100일 이상 사육 후 도축해야 수입이 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 사육국 기준 적용과 동일

법률적용을 해야 한다. 특히 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②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등에 대해 무역거래자의 경우에는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의 법령 또는 교역상대국의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프로그램저작권 및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물품 또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원산지를 혼동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한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이러한 원산지 보호를 위해, 산업자원부, 각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유관기관들은 상시적으로 원산지 표시에 대한 감시를 해야 한다.

V. 결 론

세계 각국들은 세계화개방화와 함께 국가별 경제통합의 형태로 FTA 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원산지 규정에 관한 논의가 중요한 협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 산 역외가공지역인 개성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원산지의 개념은 점차로 광역화하고 있다. 제품을 한 국가에서 디자인하고, 생산, 판매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디자인, 부품생산, 조립을 각기 다른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광역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생산공정의 국제화가 확대됨에 따라 원료생산과 가공 등이 상이한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FTA 확대로 점점 원산지 규정이 강화되고 있으며,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과 그에 따른 저관세의 교역이 이루어질때, 원산지 판정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수출에 많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원산지 규정에 대한 국제적 통일규정이 없고 국각마다 상이한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최근 한미 FTA 체결로 원산지 규정이 정해졌다. 그리고 원산지 그 자체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지만 다른 무역정책수단과 결합하면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한미 FTA 원산지 협상에서 나타났듯이 원산지 협상에 난항을 겪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에서는 수입 또는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기준은, 완전생산물품·실질적 변형 및 최소가공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또한 한미 FTA 협정은 특혜원산지 판정기준 중 완전생산기준, 실질적 변형기준 등 원산지 판정의 일반원칙은 협정문에서 규정하고 있다. 실질적 변형기준에 대한 합의는 양국에서 최종 생산과정을 거친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인정하되, 구체적인 판정기준으로

품목별 특성에 따라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또는 주요 공정기준 등으로 원산지 판정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규정과 세부적인 사안 까지도 규정하고 있는 한미 FTA 원산지 판정 기준은 달리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각각 국가별, 상품별로 달리 적용하고 있는 원산지 판정기준에 대해 무역업자는 혼란을 겪을 수 있다.

70년대 미국시장에서 Made in Korea가 이제 우리나라 국내시장에서 Made in China가 가지고 있는 시장경쟁력과 유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종래의 맹목적 외제 선호도는 많이 약화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Made in Korea의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으며, 경쟁력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반증할 수 있는 것은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중국산 제품의 원산지를 국내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들이 원산지의 위조, 허위, 상표훼손 등을 통해 중국 및 동남아산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시키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경제통합 즉 FTA가 가속화됨으로써 원산지 규정과 판정에 관한 협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협상가 뿐만 아니라 각 산업종사자들이 적극적으로 국산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외국의 원산지 위조품에 대해서 유관기관들의 상시적 검사를 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동규, “남북한 교역활성화를 위한 원산지제도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6권 제4호, 한국관세학회, 2005, p.92.
- 김석철·이제홍·박희주, 「최신대외무역법해설」, 청목출판사, 2005, p.208.
- 김영옥·오미영, “애국심, 소비자 자민족 중심성향, 원산지 이미지, 제품에 대한 태도, 구매의도간의 관계와 경쟁관계에 대한 인식이 이들 변수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광고학연구 제16권 제2호, 2005, pp.73-99.
- 김재휘·이재미·김지호, “소비자 원산지 반감과 광고모델의 원산지 현출성에 따른 광고효과”, 「광고학연구」 제17권 제1호, 2006, pp.53-76.
- 이운영·강계삼, 일본내 한류가 원산지 효과에 미친 영향, 「통상정보연구」 제8권 제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6, pp.231-254
- 이춘수·이장로·서민교, “한국 국가이미지와 기업이미지간의 상호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통상정보연구」 제8권 제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6, pp.323-341.
- 이춘수·이장로·서민교, “한국 국가이미지와 기업이미지간의 상호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통상정보연구」 제8권 제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6, pp.323-341.
- 정인교 공저, 「글로벌시대의 FTA 전략」, 도서출판 해남, 2005.

- 조우길, 장흥훈, “지역경제통합과 원산지 규정의 효력”, 「국제상학」 제18권 제4호, 한국국제상학회, 2003, p.253.(2003)
- 조원길, “남북 IT경협과 원산지 표시의 문제분석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6권 제4호, 한국관세학회, 2005, p.244.
- 채형복, “한국산 내국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의 법적 쟁점”, 「관세학회지」 제6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2005, p.78.
- 한국무역협회, 한국산원산지관정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 2004.12.
- 황병일, “원산지 이미지의 구성요인이 제품평가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광고학연구 제10권 제1호, 1999, pp.135-153.
- 황병일, 김범중, “상표 원산지와 생산원산지의 일치성이 제품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산학경영연구 제15권, 2002, pp.133-152.
- Ahmed, S.A., and M. El-adraoui, "Country-of-Origin Effects on Purchasing Manager's Product Perception", *Industrial Marketing Management*, 23(4), 1994, pp.323-332.
- Han, C., "Testing the Role of country Image in Consumer Choice Behavior",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24(6), 1994, pp.24-40.
- Han, C. Min, Country Image: Halo or Summary construct?,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6, 1989, pp.222-229.
- Hooley, G. and D. Shipley, "A Method for Modelling Consumer Perceptions of country of Origin," *International Marketing Review*. 5, 1988, pp.67-76.
- Johansson, Johny, Susan P. Douglas and Ikujiro Nonaka, "Assessing the Impact of country-of-Origin on Product Evaluations: A New Methodological Perspective",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2(Nov.) 1985, pp.338-396.
- Kaynak, A. & Kana, A., "Consumer Perception of Foreign Products: An Analysis of Product-country Image and Ethnocentrism",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Vol. 36 No.7/8, 2000. pp.928-949.
- Kaynak, E., & Kucukenmiroglu, O., "Source of Industrial Products: Regiocentric Orientation of Chinese Organizational Buyer",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26(5), 1992, pp.36-55.
- Lantz, Garald and Sandra Loeb, "Country-of-Origin and Ethnocentrism; An analysis of Canadian and American Preference Using Social Identity Theory,"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23, 1996, pp.374-378.
- Li, Zhan G., L. William Murray, and Don Scott, "Global Sourcing, Multiple Country-of-Origin Facets, and Consumer Reaction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47, 2000, pp.121-133.
- Martin, I. M., & Eroglu, S., "Measuring a Multi-dimensional Construct: Country Image",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28, 1993, pp.191-210.

- Nagashima A., "A Comparative 'made in' Product Image Survey among Japanese Business, *Journal of Marketing*, 41(Jul.) 1977, pp.95-100."
- Papadopoulos N., & Heslop, L. A., *Product-Country Image: Impact and Role in International Marketing*, NY: International Business Press. 1993.
- Pisharrodi, R.M., Parameswaran R., "Facets of Country of Origin Image: An Empirical Assessment," *Journal of Advertising*, 13(1), 1994, pp.43-44.
- Samiee, Saeed, "consumer Evaluation of Products in a Global Market",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25(fall), 1994, pp.594-595.
- White, p. D., "Attitude of U.S. Purchasing Managers toward Industrial Products Manufactures in Selected Western European Nation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10,(Spring/Summer), 1979, p.81-90.
- Yaprac. A. & Parameswaran, R., "Strategic Formulation in Multinational Marketing::A Deductive, Paradigm-integrating Approach, *In Advances in International Marketing*, 1986, pp.21-45.
- [http://www.mofat.go.kr/mofat/fta/kor/k19.pdf\(2007.5.25 발췌\)](http://www.mofat.go.kr/mofat/fta/kor/k19.pdf(2007.5.25 발췌))
- [http://www.mofat.go.kr/mofat/mk_a004/mk_b020/1225522_562.html\(2007.5.29\)](http://www.mofat.go.kr/mofat/mk_a004/mk_b020/1225522_562.html(2007.5.29))